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190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190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52812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원

변론종결 2024. 3. 20.

판결선고 2024. 4.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가단52812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1.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38,326,86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8,326,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걸 제외하면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칭도 제1심 판결의 것을 따른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제3쪽 제6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구체적인 취소 및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인 2021. 9. 6.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9,346,275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4. 2. 13.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이 156,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한도액은 원고가 구하는 위 156,000,000원에서 위

79,346,275원을 공제한 나머지 76,653,725원 중 C의 지분 1/2을 곱한

38,326,862원(=76,653,725원 × 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38,326,8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326,86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피고와 C의 1/2 공유지분으로 나누면 위 C 지분에 대한 시가는 78,500,000원이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9,346,275원으로 피고는 위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하여 위 C 지분을 취득하였는 바 즉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셈이어서 피고가 배상할 가액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바(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아닌 C의 지분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다만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덕수, 판사 윤재남, 판사 선의종

별지